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서울연구원 공동연구 추진계획

2017 . 02 . 20 .

문서번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레사무국-616	선임	국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7.03.08.	03/03 김그린	03/08 정소익	03/08 이근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책임	본부장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 (806)호			03/03 정은석	03/08 박진배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및 운영 세부계획(안)(대표이사방침 제 97호, 2017.1.12.)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교육,투어,운영)계획(안)(대표이사방침 제 285호, 2017.01.26.)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약내용	협약결과
	서울연구원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 연구 관련 협력체계 구축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공동연구 추진
사 업 비	'17년 65백만원 (서울연구원 50백만원, 서울디자인재단 15백만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타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연구원) 무 <input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서울연구원 공동연구 추진계획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연구 중심의 비엔날레로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개발을 지향함. 서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2017 서울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코자 함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는 연구 중심의 비엔날레로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개발을 지향함. 서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2017 서울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코자 함
- “서울_생산도시의 공유 네트워크”(연구명)는 2017 서울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 생산도시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서울 도심 제조업 현장의 다양한 현상을 재조명하고 도시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해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결과는 2017 서울비엔날레 생산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시물 및 투어프로그램 등으로 개발하여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함

2. 공동연구 개요

- 과 제 명 : 서울_생산도시의 공유 네트워크
- 연구기간 : 2017. 3. 1. ~ 2017. 12. 15. (10개월)
- 소요예산 : **65,000천원**
(공동출자 : 서울디자인재단 15,000천원 / 서울연구원 50,000천원)
- 연구방법 :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 수행
 - 연구책임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배형민** / 총감독,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연구) **변미리** /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 연구진 : 2017 서울비엔날레와 서울연구원이 연구실행자(그룹)을 선정하여 진행
- 연구내용 :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서울 도심 제조업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3. 세부 추진 내용

1. 연구기관별 업무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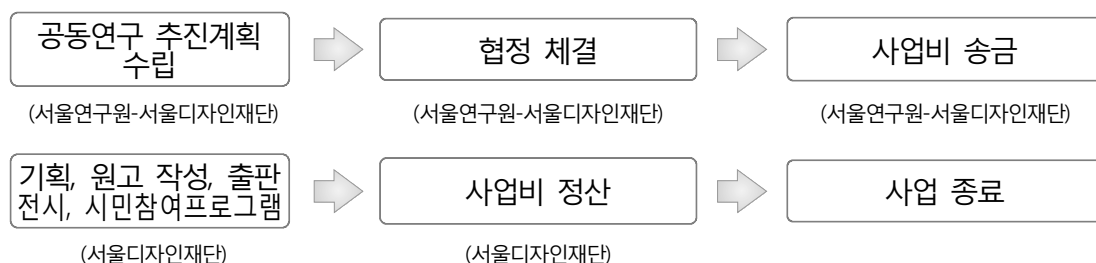
- 서울연구원 : 연구 주제 및 내용 검토, 예산 지원
 - 연구 진행 : 연구 내용 자문 및 검토, 월례 워크숍 참여
 - 기타 행정 : 예산 지원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 연구 진행 : 연구 기획, 진행 및 관리, 월례 워크숍(3회) 추진
 - 단행본 발간 : 단행본에 대한 기획, 편집, 도서 발간 등
 - 전시 기획 : 연구를 기초로 한 전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개최
 - 기타 행정 : 예산 지원, 집행

2. 「서울_생산도시의 공유 네트워크」 주요 내용

- 「서울_생산도시의 공유 네트워크」 내용 구성(안)
 - 사물의 구조로 살펴본 제조업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 물류(logistics)로 살펴본 종로 일대의 제조업 네트워크
- 월례워크숍 추진
 -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물을 확산하기 위하여 주제별로 3월 ~ 5월 사이에 월례 워크숍 약 3회 추진
- 단행본 발간
 -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의 배포를 위한 별도의 단행본 발간(서울비엔날레 전체 출판과 연계)
- 전시 개최
 - 연구 내용을 2017 서울비엔날레에서 전시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형식으로 변환하여 대중에 공개

3. 연구수행 절차 및 방법 등

■ 연구수행 절차



■ 연구수행 일정

추진내용	2017년											
	1	2	3	4	5	6	7	8	9	10	11	
연구												
1-1. 연구 세부계획 수립												
1-2. 연구 실행												
1-3. 월례 워크숍												
단행본												
2-1. 원고 작성												
2-2. 편집 및 디자인												
2-3. 발행												
전시												
3-1. 제작 및 현장 설치												
3-2. 현장 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4. 행정 사항

1. 사업비 집행 및 방법

- 사업비는 서울연구원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운용함. 서울연구원에서는 협정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신청에 의거하여 선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처리함
- 사업비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집행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제 집행방법에 따름
- 사업비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연구 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하며, 연구 주체로부터 집행 내역을 정산하고 연구종료 후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에 의거하여 정산처리
- 서울디자인재단 협약처에 회계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공동연구건은 서울연구원에서도 연구에 함께 참여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기에 정산시 기관 간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진행 가능함

2. 소요예산

- 총사업비 : 65,000 천원
(공동출자 : 서울디자인재단 15,000천원 / 서울연구원 50,000천원)
- 집행방법 : 서울디자인재단과 연구진행자 간의 수의계약 체결

별첨 1. 협정서 - 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협정서

※ 협정서는 서울연구원의 기본 양식을 따르되, 저작권에 대하여 재단 권고사항을 포함하였음(파란 글씨로 표시). 본 협정서는 서울연구원 최종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협정서

서울연구원(이하 '서울연'이라 한다)과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기관 간 업무협약(2015. 8. 26.)에 의거한 아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수행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아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 내용 및 그 추진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실시) '서울연'과 '재단'은 공동으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업명 : 서울_생산도시의 공유 네트워크
2. 사업기간 : 2017. 3. 1. ~ 2017. 12. 31. (10개월)
3. 사업비 : 금 육천오백만원정(W65,000,000)
4. 사업비 분담 : 서울연구원 50,000,000원(77%)
서울디자인재단 15,000,000원(33%)
5. 사업비 집행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이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
6. 연구책임자 :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서울디자인재단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동총감독 배형민

제3조(사업의 수행) '서울연'과 '재단'은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조정으로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 '서울연'과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에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울연'과 '재단'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한다.

③ 사업비 집행기관은 협정 체결과 동시에 회계담당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회계처리는 사업비 집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르되 사업비 집행기관의 회계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사업비는 사업 수행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분담금은 제2조에 의하며,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연'과 '재단'은 상호 합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집행기관은 상대기관의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협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서울연'과 '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정 체결 후 사업비 집행기관의 신청에 의거하여 분담된 사업비를 사업비 집행기관에 선지급하고 정산한다.

제6조(사업비의 정산) ①사업비 집행기관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정산서를 '서울연'과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의거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항목별로 정산하되, 경비는 경비 항목 내 비목별로 정산한다.

②'서울연'과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집행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기관에게 보완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기관은 '서울연'과 '재단'이 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서울연'과 '재단'은 사업비 집행기관이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과 사업비 변경 합의 없이 초과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그리고 증빙자료가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 등의 금액을 각각 환수한다.

④사업비의 정산잔액은 각 기관별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해당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산출내역서에 각 기관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역의 정산잔액은 해당기관에 귀속된다.

제7조(결과물 제출) ①'서울연'과 '재단'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종료일까지 분담된 사업부문을 완료한 후 상호 검토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성한다.

② '서울연'과 '재단'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중간 사업결과 및 사업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③ '서울연'과 '재단'은 사업결과물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한다.

제8조(지적소유권 및 결과물의 귀속) ①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지적 소유권 및 결과물은 '서울연'과 '재단'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보고서 등의 결과물은 공동명의로 발간한다.

② '서울연'과 '재단'은 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이 사업이 '서울연구원'과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서울연'과 '재단'이 이 사업의 연구를 하도급을 주는 경우,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인 '서울연', '재단' 그리고 연구를 실제 실행한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이 사업이 '서울연구원'과 '서울디자인재단'의 발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9조(협정의 해지) ① '서울연' 또는 '재단'이 이 협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연'과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서울연' 또는 '재단'이 협정을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서울연' 또는 '재단'이 이 협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등) '서울연'과 '재단'은 분담된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이 배상하여야 하며, '서울연' 또는 '재단'이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이 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한 사업 결과물이 표절 등의 위법 사항이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사업기관이 진다.

제12조(협정의 해석)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연'과 '재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협정의 효력 등) ①이 협정서의 효력은 협정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②이 협정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2017년 3월 일

서울연구원장

김 수 현 (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